

고양교육행정스쿨

연차유급휴가

꽃향기유치원 김성호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삭제 <2017. 11. 28. 개정, 2018. 5. 29. 시행>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2017. 11. 28. 개정, 2018. 5. 29. 시행>
-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시행 2020. 3. 31.>

용어

발생	현재 사용하는 연차를 생성 (통상적으로 전년도를 발생년도로 한다)
부여	[발생] 한 연차를 현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함
산정시작년	연차의 [발생] 이 최초로 시작된 년도
근무종료일	최종 출근(근무)을 한 당일
퇴직일	[근무종료일] 의 다음 날
결근일	[연차] [병가] [공가] 의 사유가 없이 근무하지 않은 날
중간입사	3월1일 근로계약이 아닌 3월2일~다음해2월28일 중 근로계약
유리	근로자와 사용자 중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우월함 (ex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시 통상임금이 더 유리한 조건)

소정근로일/출근율

2022년 소정근로일 계산						
월	총 일수	토요 휴무	주휴 (일요)	공휴일	합	근로일
3	31	4	4	2	10	21
4	30	5	4		9	21
5	31	4	5	1	10	21
6	30	4	4	2	10	20
7	31	5	5		10	21
8	31	4	4	1	9	22
9	30	4	4	2	10	20
10	31	5	5	2	12	19
11	30	4	4		8	22
12	31	5	4		9	22
1	31	4	5	2	11	20
2	28	4	4		8	20
	365	52	52	12	116	249

출근율 계산

2022년도 총 근로일 중

- 249일 중 **200일 이상 출근**
15일의 연차 발생(상시근무자)
- 249일 중 **200일 미만 출근**
1개월 만근 후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소정근로(계속근로) 포함

-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
- 가족돌봄휴직(연 90일 이내)
-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전기간)
- 병가(유급·무급)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 휴업, 파업, 결근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출근일 인정 사항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 2018.5.29. 이후 개시한 자녀 1명당 **출산 이후 최초1년의 육아휴직기간**
-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 기간
- 선거, 투표 일
- 연차휴가, 유급병가**
- 기타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소정근로(계속근로) 미포함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또는 기간)

- 육아휴직 **1년 초과 기간**
- 업무외 **질병휴직/간병휴직** 기간
- 법정 또는 약정휴일(약정휴무일)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2018.5.28. 이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날 또는 기간

출근일 미포함
(소정근로일 중 미출근으로 산정되는 날 또는 기간)

- 무급병가**
- 결근, 연차초과사용 기간**

■ 육아휴직 **최초1년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 포함 및 출근일로 보며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급여 산정 시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육아휴직 1년초과 기간 및 질병휴직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에 미포함**하며,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산출 후 만근(출근율 80%) 이상일 시 비례 산출

기본계산식

$$\text{연차수당} = \text{보상일수} \times \text{1일통상임금}$$

직종	유형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용일	보상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행정실무사 (2012.3.1.~)	상시	발생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9	10	94,656	946,560
		부여	0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조리사 (2004.3.1.~)	방중 비근	발생	14	14	15	15	16	18	19	19	20	20	21	2	18	112,088	2,017,580
		부여	0	14	14	15	15	16	18	19	19	20	20				
조리실무사 (2012.9.1.~)	방중 비근	발생	5	10	10	11	11	14	14	15	15	16	16	1	15	96,568	1,448,520
		부여	0	5	10	10	11	11	14	14	15	15	16				

- 최초 연차 시작일수	상시근무자	15일	행정실무사, 영양사, 사서, 초등보육전담사 등 방학 중 근무자 (학사일정과 큰 관련 없는 직종)
	방학중 비근무자	12일	조리사, 조리실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방학 중 비근무자 (학사일정과 밀접적 관련 직종)

- 2004.7월 이전 채용자 중 이전 연차기간 미인정(당시 대부분의 채용자) 인 경우 **2004.3.1. 연차 기산년도**로 고정
- 1년간 만근(출근율 80% 이상) 일 경우 연차 15일 발생(계속근로년수 별 가산일 별도)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일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 발생
- 1년간 만근(출근율 80%의 이상)으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발생,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연중 채용으로 1년차 5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으나, **근로기준법 60조 4항**과 관련하여 **계속근로년수 3년 기준**이 2015년이므로 2015년 연차 1일 가산 발생 (연차 기산년도 또한 2013.3.1. 이 됨)

학기중, 방학중 근무시간 상이

초등보육전담사, 시설미화원 등

직종	근무시간		2021	2022	2023	사용시간			보상시간	통상임금 (1시간당)	연차수당
	학기중	방학중				학기중	방학중	합계			
초등보육전담사	주20시간	주30시간	15일(90시간)	15일(90시간)	16일(96시간)	4일2시간 (18시간)	8일1시간 (49시간)	67시간	23시간		
시설미화원	주30시간	주14시간	0	12일(72시간)	12일(72시간)	5일 (30시간)	1일 (3시간)	33시간	39시간		

- 학기중 방학중 근무시간 상이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시간 기준 통상임금 및 연차(시간) 부여
- 연차(시간) 부여 시 일수 기준이 아닌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무시간 대비 총시간수 기준 부여
- 연차 사용 시 총 사용시간수로 미사용수당 산정 (일수 산정 X)
- 구분 기간 중 초단시간근로(주15시간미만) 기간에 대하여 연차발생월 제외

1년차 유급휴가

관련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개정 2017.11.28. 시행 2018.5.29.
- 채용 1년차 중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채용 후 1년간 연차수당과 별도로 총 11일의 유급휴가 부여

직종	연차일수	근무기간	휴가 발생일	사용기간	미사용 휴가 수당지급월	비고		
행정실무사	상시근무자	1	2022.3.1.~2022.3.31.	2022.4.1.	2022.4.1.~2023.2.28.	2023.3 (학교회계 처리기준 2023.2.28.)		
		2	2022.4.1.~2022.4.30.	2022.5.1.	2022.5.1.~2023.2.28.			
		3	2022.5.1.~2022.5.31.	2022.6.1.	2022.6.1.~2023.2.28.			
		4	2022.6.1.~2022.6.30.	2022.7.1.	2022.7.1.~2023.2.28.			
		5	2022.7.1.~2022.7.31.	2022.8.1.	2022.8.1.~2023.2.28.			
		6	2022.8.1.~2022.8.31.	2022.9.1.	2022.9.1.~2023.2.28.			
		7	2022.9.1.~2022.9.30.	2022.10.1.	2022.10.1.~2023.2.28.			
		8	2022.10.1.~2022.10.31.	2022.11.1.	2022.11.1.~2023.2.28.			
		9	2022.11.1.~2022.11.30.	2022.12.1.	2022.12.1.~2023.2.28.			
		10	2022.12.1.~2022.12.31.	2023.1.1.	2023.1.1.~2023.2.28.			
		11	2023.1.1.~2023.1.31.	2023.2.1.	2023.2.1.~2023.2.28.			
조리실무사	방학중 비근무자	1	2022.3.1.~2022.3.31.	2022.4.1.	2022.4.1.~2023.2.28.	2023.3 (학교회계 처리기준 2023.2.28.)		
		2	2022.4.1.~2022.4.30.	2022.5.1.	2022.5.1.~2023.2.28.			
		3	2022.5.1.~2022.5.31.	2022.6.1.	2022.6.1.~2023.2.28.			
		4	2022.6.1.~2022.6.30.	2022.7.1.	2022.7.1.~2023.2.28.			
		5	2022.7.1.~2022.7.24.	2022.8.1.	2022.8.1.~2023.2.28.			
			2022.8.16.~2022.8.31.					방학기간 15일 이상 미발생
		6	2022.9.1.~2022.9.30.	2022.10.1.	2022.10.1.~2023.2.28.			
		7	2022.10.1.~2022.10.31.	2022.11.1.	2022.11.1.~2023.2.28.			
		8	2022.11.1.~2022.11.30.	2022.12.1.	2022.12.1.~2023.2.28.			
		9	2022.12.1.~2022.12.31.	2023.1.1.	2023.1.1.~2023.2.28.			
			2023.1.1.~2023.1.13.					방학기간 15일 이상 미발생

- 미사용 휴가 수당지급은 연차유급휴가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함.
- 퇴직 총연차일수 정산 시 매년의 연차수당과 합산하여 계산.
- 유급휴가 당겨쓰기는 불허하며, 부여된 일수를 초과 할 시 결근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1일분 공제
-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무급기간) 15일 이상인 월은 유급휴가 미발생

휴직자

휴직

- 육아휴직 : 1년차 육아휴직 소정근로일수 포함, 출근인정
- 질병,간병,기타 휴직 : 근로의 의무가 없으며, 소정근로일수 미포함

육아휴직

질병휴직

학년도	시작	종료	근무사항	발생	부여	학년도	시작	종료	근무사항	발생	부여
2019	2019/03/01	2020/02/28	육아휴직 (1년차)	17	17	2019	2019/03/01	2019/06/30	근무	0	17
2020	2020/03/01	2020/12/31	육아휴직 (연장, 2년차)	0	17		2019/07/01	2019/12/31	질병휴직	0	
	2021/01/01	2021/02/28	복직/근무	2일 5시간			2020/01/01	2020/02/28	근무	9	
2021	2021/03/01	2022/02/28	만근	18	2일 5시간	2020	2020/03/01	2021/02/28	만근	18	9

육아휴직

- 육아휴직 최초 1년차의 경우 소정근로일 포함 및 출근인정
- 육아휴직 2년차 이상 소정근로일 미포함(근로의 의무가 없으며, 연차 산정 근무일도 제외됨)
- 17일 (만근 시 총 발생예상일) * 59일(복직 후 실제 출근일수) / 365일 = 2.7일 = 2일 5시간
- 2021학년도의 경우 전년도 발생 한 2일5시간의 연차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음.

질병휴직

- 질병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소정근로일 미포함(근로의 의무가 없으며, 연차 산정 근무일도 제외됨)
- 18일 (만근 시 총 발생예상일) * 181일(휴직기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 / 365일 = 8.9일 = 9일
- 2019학년도에 비례 발생 된 9일의 연차를 2020학년도에 사용할 수 있음.

퇴직자(3/1 채용)

A) 2012/3/1 채용 - 2023/2/28 퇴직 조리실무사(방학중비근무자)							B) 2012/3/1 채용 - 2022/8/31 퇴직 조리실무사(방학중비근무자)						
년도	회계연도 기준	발생	부여	채용년도기준	발생	부여	년도	회계연도기준	발생	부여	채용년도기준	발생	부여
2012	2012/3/1~2013/2/28	10	0	2012/3/1~2013/2/28	10	0	2012	2012/3/1~2013/2/28	10	0	2012/3/1~2013/2/28	10	0
2013	2013/3/1~2014/2/28	10	10	2013/3/1~2014/2/28	10	10	2013	2013/3/1~2014/2/28	10	10	2013/3/1~2014/2/28	10	10
2014	2014/3/1~2015/2/28	11	10	2014/3/1~2015/2/28	11	10	2014	2014/3/1~2015/2/28	11	10	2014/3/1~2015/2/28	11	10
2015	2015/3/1~2016/2/28	11	11	2015/3/1~2016/2/28	11	11	2015	2015/3/1~2016/2/28	11	11	2015/3/1~2016/2/28	11	11
2016	2016/3/1~2017/2/28	12	11	2016/3/1~2017/2/28	12	11	2016	2016/3/1~2017/2/28	12	11	2016/3/1~2017/2/28	12	11
2017	2017/3/1~2018/2/28	14	12	2017/3/1~2018/2/28	14	12	2017	2017/3/1~2018/2/28	14	12	2017/3/1~2018/2/28	14	12
2018	2018/3/1~2019/2/28	15	14	2018/3/1~2019/2/28	15	14	2018	2018/3/1~2019/2/28	15	14	2018/3/1~2019/2/28	15	14
2019	2019/3/1~2020/2/28	15	15	2019/3/1~2020/2/28	15	15	2019	2019/3/1~2020/2/28	15	15	2019/3/1~2020/2/28	15	15
2020	2020/3/1~2021/2/28	16	15	2020/3/1~2021/2/28	16	15	2020	2020/3/1~2021/2/28	16	15	2020/3/1~2021/2/28	16	15
2021	2021/3/1~2022/2/28	16	16	2021/3/1~2022/2/28	16	16	2021	2021/3/1~2022/2/28	16	16	2021/3/1~2022/2/28	16	16
2022	2022/3/1~2023/2/28	17	16	2022/3/1~2023/2/28	17	16	2022	2022/3/1~2022/8/31	8.5	16	2022/3/1~2022/8/31	8.5	16
계산		147	130		147	130	계산		138.5	130		138.5	130
총지급				130			총지급				130		

- 회계연도 기준 , 채용년도 기준을 서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 2017년 발생분(2018년 부여분)부터 방학중 비근로자의 연차 2일 가산 (근로기준법 2017.5.29. 개정)
- 2022학년도 발생분 17일을 부여 받을 2023.3.1. 근무일이 없으므로 부여되지 않고 소멸됨
- A) B) 유형 모두 회계연도 기준 = 채용년도 기준 으로 최종 정산결과 지급

퇴직자(연중 채용, 연중 퇴직)

A) 2012/7/1 채용 - 2022/8/31 퇴직

년도	회계연도기준	발생	부여	채용연도기준	발생	부여
2012	2012/7/1~2013/2/28	6.6	0	2012/7/1~2013/6/30	10	0
2013	2013/3/1~2014/2/28	10	6.6	2013/7/1~2014/6/30	10	10
2014	2014/3/1~2015/2/28	10	10	2014/7/1~2015/6/30	11	10
2015	2015/3/1~2016/2/28	11	10	2015/7/1~2016/6/30	11	11
2016	2016/3/1~2017/2/28	11	11	2016/7/1~2017/6/30	12	11
2017	2017/3/1~2018/2/28	14	11	2017/7/1~2018/6/30	14	12
2018	2018/3/1~2019/2/28	14	14	2018/7/1~2019/6/30	15	14
2019	2019/3/1~2020/2/28	15	14	2019/7/1~2020/6/30	15	15
2020	2020/3/1~2021/2/28	15	15	2020/7/1~2021/6/30	16	15
2021	2021/3/1~2022/2/28	16	15	2021/7/1~2022/6/30	16	16
2022	2022/3/1~2022/8/31	8	16	2022/7/1~2022/8/31	3.4	16
계산		130.6	122.6			
총지급				133.4		130

B) 2012/10/1 채용 - 2022/8/31 퇴직

년도	회계연도기준	발생	부여	채용연도기준	발생	부여
2012	2012/10/1~2013/2/28	4	0	2012/10/1~2013/9/30	10	0
2013	2013/3/1~2014/2/28	10	4	2013/10/1~2014/9/30	10	10
2014	2014/3/1~2015/2/28	10	10	2014/10/1~2015/9/30	11	10
2015	2015/3/1~2016/2/28	11	10	2015/10/1~2016/9/30	11	11
2016	2016/3/1~2017/2/28	11	11	2016/10/1~2017/9/30	12	11
2017	2017/3/1~2018/2/28	14	11	2017/10/1~2018/9/30	14	12
2018	2018/3/1~2019/2/28	14	14	2018/10/1~2019/9/30	15	14
2019	2019/3/1~2020/2/28	15	14	2019/10/1~2020/9/30	15	15
2020	2020/3/1~2021/2/28	15	15	2020/10/1~2021/9/30	16	15
2021	2021/3/1~2022/2/28	16	15	2021/10/1~2022/8/31	14.6	16
2022	2022/3/1~2022/8/31	8.5	16			
계산		128.5	120			
총지급				128.6		114

- A) 의 경우 채용연도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채용연도 기준으로 적용
- B) 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채용연도 기준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
- A) 2022년도 부여되어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와 정산 후의 차액 7.4일을 합한 연차수당을 퇴직 시 지급

연차사례1

2019/9/1 채용 - 2022/8/31 퇴직 조리실무사
(여름방학 7/25~8/25, 겨울방학 1/6~2/28)

년도	회계연도 기준					채용일자 기준				
	시작	종료	종별	발생	부여	시작	종료	종별	발생	부여
2019	2019/9/1	2020/2/28	근무			2019/9/1	2020/8/31	근무		
2020	2020/3/1	2020/8/31	근무			2020/9/1	2021/4/30	육아휴직(1년차)		
	2020/9/1	2021/2/28	육아휴직(1년차)			2021/5/1	2021/8/31	근무		
2021	2021/3/1	2022/4/30	육아휴직(1년차)			2021/9/1	2022/8/31	근무		
	2021/5/1	2022/2/28	근무			합계				
2022	2022/3/1	2022/8/31	퇴직							
합계										

연차사례2

2019/3/1 채용 - 2023/2/28 퇴직 초등보육전담사
(학기 중 4시간, 방학 중 6시간) - **단위: 시간**

년도	회계연도 기준					채용일자 기준				
	시작	종료	종별	발생	부여	시작	종료	종별	발생	부여
2019	2019/3/1	2020/2/28	만근			2019/3/1	2020/2/28	만근		
2020	2020/3/1	2021/2/28	만근			2020/3/1	2021/2/28	만근		
2021	2021/3/1	2022/2/28	만근			2021/3/1	2022/2/28	만근		
2022	2022/3/1	2023/2/28	퇴직			2022/3/1	2023/2/28	퇴직		
합계						합계				

질의응답(발췌)-1

원문: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복무제도 안내

5-7. (연차유급휴가) 2019년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 개정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기존 10일에서 12일로 바뀌었는데, 그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2019.2.1.)이 속한 회계연도(2018년도) 중,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 사용가능일에 추가하여 적용됨
- 예) 2017.3.1.자로 학교에서 채용된 방학 중 비근무자의 2017학년도(2017.3.1.~2018.2.28.) 근무 실적에 의해 2018학년도(2018.3.1.~2019.2.28.)에 청구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2일(10일+2일)임

5-11. (연차유급휴가) 2019학년도 전체 질병휴직 사용으로 2020.3.1에 복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내년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발생하는 법정 유급 휴가임
- ◆ 따라서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으며,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결근으로 간주되며, 해당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됨

5-16. (연차유급휴가)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직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일수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이 되는 근로자라면 지급해야 함
-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질의응답(발췌)-2

원문: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복무제도 안내

5-21. (연차유급휴가) ①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② 2021.3.1.~9.30.(만7개월)까지 근로 후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③ 2021.3.1.~2024.2.28.(만 3년근로)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 ◆ ① 1년의 근로의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도 발생, 총 최대 26일 발생
- ◆ ②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 관계가 있어야 함.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최대 6일 발생
- ◆ ③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5-23. (연차유급휴가) 2019.3.1.~8.31.까지 A초등학교에서 조리실무사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OO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2019.9.1.자로 B초등학교에 발령난 경우, 2020.3.1.자 연차일수 계산 시 가산 기준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 ◆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대해 부여함. A초등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OO교육지원청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한 경우는 종전 계약과 단절로 보아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가산일은 2019.9.1.이 됨

정리

- 채용 1년차 1년 동안 만근(출근율 80%이상) 이상 시 15일(방중비근무자 12일)의 연차 발생되며, 다음연도 15일 연차 부여
- 출근율 80% 미만 시 15일의 연차 미부여,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발생 / 다음연도 부여
- 육아휴직 1년차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포함 및 출근으로 인정, 100% 연차부여 및 미사용수당 지급
- 육아휴직 1년초과 또는 질병휴직 시 소정근로일수 미포함으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대하여 출근율 80% 이상 근무 시 연차 비례 부여, 80% 미만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발생 / 다음연도 부여
- 육아휴직 1년초과 또는 질병휴직으로 회계연도 전체 미근무 시 해당연도 연차 미발생 / 다음연도 연차 미부여
- 연차 미부여 시 그 다음연도의 연차 당겨쓰기 금지
- 연차 사용일수 초과 시 결근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 1일분으로 감액처리 (연차 당겨쓰기 금지)
-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 총 연차수와 채용일자 기준 총 연차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교육공무직원 병가/공가/특별휴가

<p>병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유급병가 30일 무급병가 30일 총 60일의 병가 부여 (특수운영직군의 경우 유급병가 15일 무급병가 15일 총 30일 부여) ■ 30일이상 병가 사용 시 주말 및 휴일 포함 산정 ■ 유급병가의 경우 주말 및 휴일 미산정 하며, 출근일 만 병가로 인정 ■ 무급병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급여에서 감액(공제) 처리 ■ 연속하여 7일 이상 사용 또는 누계 10일 이상 사용 시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미제출 시 연차 또는 결근 처리) ■ 동일 질병으로 병가 지속 사용 시 최초 제출한 진단서 같음 ■ 1년 미만 근로계약 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병가 부여 (3개월 미만 계약 시 병가 미부여) ■ 출근 하지 않으며 병가와 연차의 연속 사용 시 병가 계속 사용으로 처리
<p>공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훈련의 경우 ■ 공무로 인하여 국가기관에 출석 하는 경우 ■ 정기건강검진, 결핵검진을 받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재난, 단체협약에 포함된 기타의 사유(코로나19 포함) 의 경우 ■ 보건증 발급, 교육연수 등의 사유의 경우 근무지 내/외 출장 처리
<p>특별휴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휴가 :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참조 ■ 재해구호휴가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직원은 5일 이내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 입영휴가 : 병역법에 따라 자녀의 군 입영 시 1일의 특별휴가 부여 (입영통지서 제출)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출석수업 개인 연차를 우선 사용 후 초과하는 수업일수에 한하여 사용가능 ■ 퇴직준비휴가 : 정년퇴직 직전 20일 간 유급휴가 부여 (토/일 및 공휴일 포함) 방학중비근무자의 퇴직준비휴가 시 방학식 이전 및 개학이후의 총일수 20일 한정

연차관리대장

연차유급휴가 관리대장

학교명	직종명	성명		최초채용일	근무유형			
		생년월일						
근무기간	연차일수	사용일수	지급일수	통상임금	지급액	지급일	기록자	비고

- 채용일부터 개인 연차 누적 관리 (매년 누적 작성이 업무상 유리)
- 인사발령 시 전입교 원본 이관
- 매년 연차수당 지급 시 근로자 확인 서명 필수
-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보관

공무원 연가보상비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식

본봉 x 86% / 30일 * 잔여 연가 일수

- 최대 21개 지급 (단, 전년도 병가 미사용 시 1일 가산)
- 호봉 및 근속과 관계없이 공무원 임용 전 **공무원기여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납부 경력** 만을 전임경력으로 인정함.
(임용 전 수령 완료 된 각 공무원기여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전체 반납을 하여 현임 공무원기여금과 합산하여야 함)
(군인연금 미적용대상인 사병복무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분의 소급기여금 납부)
- 연가 일수 산정 시 매 연도 시작일자 아닌 **최종일(12/31) 기준** 연가일수 산정
(2022/3/1 임용(경력없음) : 4/1~12/31/ 기간 동안 연가 9일 사용 가능 (제외월수 2월 계산 , 1년미만 총 11개 * 10개월 / 12개월)
- 교원 중 **교사업무(학교근무) 해당자(41조연수 지급자)**는 연가보상비 대상 제외(제외월수 12월 기입)
-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기관 근무 교원(41조연수 미지급자)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 교원의 연중 학교->기관 또는 기관-> 학교 로 인사발령 된 경우 학교 근무기간에 대하여 제외월수 산정
- 매년 12월 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며, 지급일 이후 사용 또는 초과 사용에 대하여 다음월(다음연도) 환수조치 하거나 다음연도 연가 미리사용 가능
(1년 미만: 5일, 2년 미만: 6일, 3년 미만: 7일,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 6/30 퇴직 시 제외월 6개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병가 등)은 연가 제외월로 차감 (**병가 15일 이상일 시 1개월로 환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12개월 x 해당연도 연가일수**
- 해당연도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연가의 이월/저축 할수 있으며, 연가보상비에서 제외
- 6월이상 병가 사용 중 진단서(소견서) 미제출 시 연가로 전환
- 연가 제외월 등으로 인하여 연가일수 산출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